
제60차 임시 이사회

일시 : 2019년 10월 8일(화) 오전 10시

장소 : DDP 아너스라운지(배움터4층)



○ 간사 : 안녕하십니까? 저는 7월 17일자로 발령받아서 온 이사회 간사를 맡은 기획본부장 신윤재입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제60차 임시 이사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오늘 처음 이사회에 참여하시는 제2대 재단 노동자이사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임명장을 이사장님께서 대리수여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과 유성자 노동자이사님은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유성자.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노동자이사에 임함.

2019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동박수)

임기는 2019년 8월 12일부터 2022년 8월 12일까지 3년간입니다.

유성자 이사님,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 유성자 이사 :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2대 노동자이사로 선출된 유성자라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노동자이사는 저희 재단에서 직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임명된 만큼 직원들과 재단을 위해서 3년 동안 힘써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첫 이사회이기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희 재단의 직원들이 재단과 서울시민과 디자인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노동이사가 됨으로 해서 직원들과 했던 약속은 저희 직원들이 다치지 않고 재단과 시민과 디자인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앞에서 직원들과 도와주는 역할이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저희가 어떤 결과나 성과 위주보다는 과정들을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재단이 건강하게 직원

들이 함께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이사님들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 간사 :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신입 이사님이 두 분 더 계십니다. 백일헌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님과 유연식 서울특별시 문화본부장님이 7월 1일자로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되었고, 오늘 유연식 문화본부장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동박수)

- 유연식 이사 : 제가 7월 1일자로 문화본부장으로 발령받고 오늘 이사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한문철 선배님께서 이전 문화본부장님을 하셨는데 오늘 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 또, 이충기 교수님, 이사장님 다 예전에 아셨던 분들이고 해서 낯설지 않습니다. 앞으로 디자 인재단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시청하고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 간사 :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사회는 임원 총 15분 중에서 이사님 10분, 감사님 2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백일헌 이사님, 김승언 이사님, 최소현 이사님은 지방컨퍼런스와 강의 등으로 불참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사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사회 상정안건은 총 4건으로 「정관 개정안」, 「2019년 예산 전용안」, 「인사규정 개정안」, 그리고 「DDP 대관규정 개정안」입니다. 보고안건은 직장내괴롭힘금지 운영내규 제정과 인사규정시행내규, 임금피크제 운영내규, 업무분장내규일부 개정 등 총 4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사항으로는 지난 9월 16일에 끝난 휴먼씨티 디자인 어워드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사장님께서 개회선언 후 이사회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강병길 이사장 : 지금부터 제60차 서울디자인재단 임시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시작 전에 지난 4월 24일에 개최되었던 58회 임시 이사회와 7월에 서면 의결한 59차 임시 이사회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 제58차 이사회 상정안건은 2건으로 「2019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 「복무규정 개정안」 이었고 2건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2019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은 DDP 미디어 라이팅 콘텐츠 구축사업을 위한 재단 운영예비비 27억 사용과 이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안을 승인하였습니다.

복무규정 개정안은 제17조(지각 및 조퇴) 2항의 “조퇴 2회 이상에 대한 주의 처분” 및 “시말서 징구” 내용 삭제를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제59차 이사회 상정안건은 「2019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안」 1건으로, 서면의결로 진행되었으며,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지침에 의거하여 수립한 재단의 「2019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안」을 승인하였습니다. 향후 매년 3월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당년도 안전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강병길 이사장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제60차 이사회 상정안건 4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정관 개정안

- 간사 : 의안번호 제182호 정관 개정 내용입니다. 자료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안내”에 따라 근로자이사제 관련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자이사제”는 “노동이사제”로, “근로자이사”는 “노동자이사”로 용어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재단 정관에 사용된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정관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항 3호의 “근로자이사”를 “노동자이사”로 변경하고, 제10조(임원의 임기) ①항의 “근로자이사”를 “노동자이사”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재단 정관 제40조(정관의 변경)에 따르면,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앞서,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정관) 2항에 의거하여, 정관 변경에 대한 시장 승인 요청 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보고를 9월 3일 완료하였습니다.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 8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강병길 이사장 : 네. 안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이사님이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어와 명칭 변경에 관련된 내용으로 특별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사 있음)

그러면 정관개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2019년 예산 전용안

- 간사 : 의안번호 제183호 2019년 예산 전용안입니다. 자료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디자인공예상품 개발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정책사업 간

예산 전용을 통해 해당 사업 예산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이에 따라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사전에 배부해드린 자료에는 최종에는 2억 5,000만원으로 사항입니다. 금년도 사업예산 중 스마트 유니버설디자인시티 사업 내 불용이 예상되는 일부 예산을 디자인비즈 니스허브 정책사업으로 전용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DDP 개관 5주년 이후, DDP 브랜드 정체성 확립과 브랜드 상품의 질적 향상, 서울시의 디자인 상품 개발 요구가 증가해왔습니다. 특히, 2018년 4월 대표이사 임명장 수여식 및 면담, 2019년 5월 서울새활용플라자 아부다비 루브르 박물관장 면담, 2019년 8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혁신실행계획 보고회 등 시장님께서 여러 차례 걸쳐 특별히 지시하신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디자인 공예 상품 개발 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DDP명품 브랜드를 개발하고 디자인·공예분야 전문 자문단을 운영하여 DDP 명품 브랜드 상품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이 확정되면 대행사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강병길 이사장 : 네. 안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이사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 5,000이 증액되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대표님께서 서울시하고 합의는 하셨는지요?
- 최경란 이사 : 이 부분에 대해서 전용 추진근거는 2019년 그 이전에도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신년사에서도 제시한 혁신생태계, 공공테스트베드 근거해서 여러 수출산업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신제품 브랜드 개발에 DDP의 명품을 개발해서 전 세계에 디자인제품이 우리 서울 것 또, DDP브랜드가 갔으면 좋겠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누차 말씀하셨는데 최근 아부다비 출장 때 루브르박물관 뮤지엄을 보시고 본격적으로 말씀하셨고 필요하면 추진단을 만들고 별도예산을 확보하는 (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여의치 않다가 마지막 올해 예산조정에 약간 사실 많은 예산을 추구하고자 했으나 12월까지 추진해야 되고 실행할

수 있는 만큼만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정도만 해서 샘플제작비까지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50여개의 전통을 기반으로 한 서울의 상품을 지금 준비된 분들이 바로 DDP화 할 수 있는 그런 큐레이터들을 선별해서 큐레이터들이 아이টে 을 골라서 기획해서 그것을 제작해나가는 비용 지금 2억 5,000은 제작비용이 해당이 됩니다.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문철 이사 :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13쪽을 보시면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1단계 샘플까지 3억 3,500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2억 5,000으로 상품화 제작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샘플을 만드는 것을 상품화로 간다는 느낌으로 봤는데 그게 맞습니까?
- 최경란 이사 : 네, 맞습니다.
- 한문철 이사 : 그리고 18쪽을 보시면, 후속감리 기획해서 책임연구원, 연구원 인건비가 있고, 디자인제작 상품화 및 패키지 그 다음에 사업운영비가 있는데 여기 상품매입비하고 선정디자인을 보면 직접 우리가 개발하는 부분도 있지만 디자이너들이 개발한 제품들을 매입해준다는 의미로도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최경란 이사 : 기존 진행중인 것은 기존사업을 해오던 부분들이고 이번에 의결해 주시는 부분은 직전 단계에서 명품 1단계 브랜드 상품들을 제가 아까 설명 드린 큐레이터들이 선별한 예를 들어서 5명의 큐레이터들이 한 명의 큐레이터가 10개의 제품을 추천해서 작가들이 우리 DDP 상품들을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것을 만들겠다고 샘플을 하면 그 다음 그 부분을 저희가 DDP매장에서도 팔고 하려면 샘플은 샘플이고 제품을 양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품의 양산이 아니라 다품종소량이기 때문에 몇 개씩은 만들어야 저희도 전시가 되고 특히 이번에 살림1관에 시민디자인 라운지 중심의 복합 공간들이 12월에 오픈하는데 그 공간의 기능 중의 하나가 갤러리 상품들을 전시해서 시민들도 보고 즐기고 구입도 할 수 있어서 경제적인 DDP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

는 그런 목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들이 나와서 실제 제품들이 샵에도 전시되고 라운지에도 전시됨으로써 저희가 판매상품 매출도 올해 실적이 되게끔 하려고 이 부분이 샘플제작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내년 3월에 항상 우리가 프랑스로 전시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밀라노 공간에 디자인중심지에다 전시할 계획을 잡고 있어서 제작의 부분은 올해 실현되는 게 꼭 필수적이라 일부 전용했습니다.

- 한문철 이사 : 그러면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샘플 했던 것을 그대로 제작하는 제품화 비용 플러스해서 내년도 3월 전시품 등을 위한 기획 왜냐하면 여기 후속감리기획하고 상품디자인 심사하는 것을 보면 상품을 기획한 것을 구매하는데 왜 책임연구원과 연구원이 필요한가, 라는 약간의 의문이 있었는데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지만 이게 계층이 달라서 상품 샘플을 상품화하는 부분도 있고 또, 내년도 전시를 위한 기획도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 최경란 이사 : 네, 그것을 같이 염두에 두고 합니다.
- 이충기 이사 : 그것과 같이 궁금한 것이 프로세스하고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지금 어떤 단계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그것을 제품화 하는 것은 또 어떻게 하는지 그냥 무조건 다 지원해줍니까?
- 최경란 이사 : 아니, 그렇지 않고 지금 1단계 것은 벌써 공지가 나가서 전용 금액 말고 1단계에서 그것은 큐레이터의 예산으로 공모해서 하면 퀄리티가 보장받지 않고 이번 부분은 이제까지는 대행사가 했고 큐레이터를 엄선해서 그 큐레이터가 제품의 퀄리티를 보장하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 부분은 사실은 지금부터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아주 알려진 최고의 명장 디자이너의 감각으로 사실은 제품들이 거의 검증이 된 분인데 DDP 사항으로 효과 있게 큐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큐레이터로,
- 강병길 이사장 : 책임연구원 2인이 결국은 큐레이터입니까?

- 최경란 이사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2인이 될지는,
- 강병길 이사장 :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까?
- 최경란 이사 : 대행사가 결정이 됩니다.
- 이충기 이사 : 저희가 항상 돈이 다 들어가고 성과가 없는 이유는 기간을 제가 여쭙본 이유가 저희는 시간의 축적이 없어요. 누군가 검토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진짜 확실하다고 싶을 때 돈을 투입해서 상품화해야 되는데 그냥 큐레이터만 믿고 다 맡겨놨는데 나중에 성과가 없어요. 그러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책임도 안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저는 이렇게 올해 해서 올해 결과를 내는 것보다 올해 하는 것은 내년 해서 순차적으로 프로세스를 잘 만들어야 적어도 시제품을 만들어서 여러 소비자층의 반응도 보고 다시 조정하고 다시 만들고 해야 되는데 디자인에서 끝나면 무조건 상품화해버리니까 나중에 팔리지도 않는 부분, 반응도 보지도 않고 만들어 버리는 것이 되니까 기간문제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올해해서 올해 상품화 하는 것은 너무 급합니다. 올해 해서 내년에 상품화한다는 목적으로 하고 또, 내년은 그 다음 해에 이렇게 하면 매해마다 상품화가 되기는 하니까 프로세스를 잘 지키시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경란 이사 : 그래서 이제까지 사실은 봄에 해서 최근에 그런 방법으로 했는데 그게 사실 1년을 해도 결과가 누가 어떤 컨셉으로 하느냐에 따라 너무 다르더라고요. 3억 5,000을 들이거나 2억 얼마를 들여서 10개를 만들었지만 그게 미흡한 상황이 되지요.
- 이충기 이사 : 나중에 안 팔리면 돈은 돈 대로 들어가서 감사의 지적을 받으니까요.
- 최경란 이사 : 그래서 이번에는 기획 자체를 잘 하는 분들을 나한테 의뢰하는 이런 적은 없거든요. 보통 이제까지는 공모를 해서 그러니까 공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예측 불허한 사람 내에서 하고, 표현은 그렇지만 투자를 많이 하고 자문하고 컨설팅을 해도 나올 수 있는 결과가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탑 라인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라인하고는 다른 기념품이나 작은 상품들이지만 그래서 그것은 기획에 의해서 그 부분은 개런티 되고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고, 추가되는 부분은 그것에 대한 몇 개의 물건도 지원해줘야지 샘플만 보고 우리가 그냥 끝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있는 분들은 바로 'ready to sell'입니다.

- 이충기 이사 : 그런 유명하고 잘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공공기관이 할 때는 지면공모를 하든 지면 제한공모를 하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잘한다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아마 절차는 제대로 밟으셔야 할 겁니다.
- 최경란 이사 : 네. 그래서 큐레이션 제도로 하려고 합니다.
- 설은아 이사 : 실제로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 최경란 이사 : 지금 철기 부분하고 도자, 가죽 우리 공예에 전통분야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좋은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부분들에 유사한 것들을 DDP화하는 그게 가장 빠르다는 결론으로 명품 시리즈는 그렇게 만들어서 일단 보여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저렴한 몇 만 원짜리 그래서 몇 십만 원까지는 갈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시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 대사님도 여러 번 말씀하시지만 너무 당장 쓸 것도 없고 그런데 사실 기간 주고 많이 한다고 재단이 국내에서 이제까지 몇 년 했습니다. 사실 디자인 산업은 여러 사유로 그렇게 많이 투자할 여력과 근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예 쪽은 많이 투자했지만 기간을 줬다고 꼭 잘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 이충기 이사 : 제가 말씀드리는 기간은 축적이나 숙성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디자인 기간도 그렇지만 디자인이라는 게 아이디어로 반짝 해서 금방 생산하는 것은 가능한데 상품화 하는 것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디자인이 좋아도 시장에서 반응이 없으면 안되는 겁니다. 그게 상품화에 성공하려면 테스트 기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강병길 이사장 : 지난 번 대표님 또, 우리 담당하고 있는 본부장님 말씀을 듣고 이번에는 성격을 좀 다르게 실질적인 브랜딩 된 DDP 또, 서울시에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 마련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재단이 초기부터 꾸준히 고유상품 고유 공예디자인 상품 개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별 실효성이 없었던 것은 지금 이사님들이 지적하시고 의견 주신 내용처럼 이게 아무리 유명한 디자이너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서울시만을 위하고 DDP만을 위해서 디자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해외의 로마나 유수의 디자인 미술관, 박물관들도 그들이 자체 브랜딩을 개발해내지는 않아요. 주변에 있는 아주 좋은 디자인 공예 상품들을 아웃소싱 해서 거기에다가 브랜딩을 입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명칭이 저는 브랜드상품 제작 사업이라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브랜딩 사업이 적절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랑할 만한 아주 좋은 문화디자인 상품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싱하는 역량이 부족한 거지요. 파크볼펜에다가 서울시 이름을 찍어서 주면 뭐합니까? 우산에다가 서울시 예를 들어서 브랜드 찍어서 우산 나눠준다고 해서 서울시의 고유 상품 선물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그런 코디네이터들이 좋은 상품을 추천하고 거기에 우리 브랜딩을 하는 그런 역할이 같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마 대표님도 최구환 본부장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이번 사업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코디네이터를 잘 선정하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소싱해서 브랜딩해서 전시도 하고 그것이 밀라노도 가고 하는 것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백지에서 스케치하고 아이디어 해서 제작하고 만들어내는 것은 이충기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실효성이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 이충기 이사 : 17페이지에 보면 3개월 안에 다 끝난다고 되어 있거든

요.

- 강병길 이사장 :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후자의 방식으로 아마 재단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속사업으로 이번에 끝장을 보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브랜딩을 축적해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선물할 수 있는 좋은 서울시를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선물들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 백준상 이사 : 16페이지에 보면, 상품에 대한 개발군이 Table Ware부터 Kids까지 굉장히 다양한데 이게 앞서 15페이지에서는 장인에 대한 조사 발굴만 있어서 이게 생활 잡화 같은 현대적인 제품도 다루시는 것인지 아니면 장인 공예전통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최경란 이사 : 유사한 이런 것들을 제작하고 발굴하고 개발하는 데는 공예진흥원도 있잖아요. 저희는 차별을 두려고 라이프스타일 시민들이 일상에 쓰는 기능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냥 공예가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는데 우리가 장기 로드맵이 이런 상황이지 이번에 할 때는 큐레이터 분들이 제안하겠지요. 어느 포커스군을 일상에 관련되는지 해서 장기적인 로드맵으로 보시면 되고요. 사실 15페이지에 쓴 것은 그런 전체적인 개념을 넣다보니 2억 5,000을 이 기간에 다 하겠다는 오해를 갖게끔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내년 3월까지 해서 불용 예정된 예산을 야심차고 적극적인 (안)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12월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저희 정책과장님 하고 조율하다보니 2억 5,000으로 줄이면서 샘플에 대한 확신된 것만 하는 겁니다. 전통에 대한 기술을 현대 기념품이나 문화상품에 접목하는 그 부분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모던라인으로 산업디자이너들이 상품들을 아까 이충기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1년 이상을 갖고 더 가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시급성도 있고 빨리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미 존재하

지 발굴한다고 새로운 군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헤안 있는 분들이 잘 선정해서 좋은 상품으로 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염두에 두고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몇 개라도, 야심차게 50개지만 최대한 여러 분야니까,

- 김정선 이사 : 큐레이터 후보군도 있습니까?
- 최경란 이사 : 그것은 승인이 되면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다각적으로 추천을 받고자 합니다. 큐레이터들도 예를 들어서 10개하려면 15~20명의 추천작가들 작품을 해주시면 겹치는 부분도 있고 50개를 하면 그래도 저희가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지 않을까,
- 강병길 이사장 : 그런데 지금 의견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가이드를 ‘전통적 기법을 적용한 라이프스타일 상품군’ 이렇게 제한을 해버리면 큐레이터나 코디네이터나 그 범주 안에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하고 그 부분을 너무 전통적 기법이라든지 장인이라든지 전통소재와 기법 이렇게 너무 제한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경란 이사 : 그래서 초기에는 사실은 고민했습니다. 제일 빨리 안정적으로 잘하고 한국적이고 그래도 서울 할 때 내세울 수 있는 것을 하려면 안정적인 것이 우리 문화가 잘 알려진 몇 가지로 했지만 전통을 현대화 하는 기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해야지 그냥 하면 온갖 기념품들이 나와서 전체를 봤을 때 일색이 없다고 할까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뒀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할 때는 그렇게 모던라인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 이충기 이사 : 죄송합니다만 조금 더 기획단계에서 고려해야 될 것이 지금 자꾸 작가위주로 얘기하시는 것에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층을 고려했을 때는 타겟을 기획할 때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할 때 어떤 것이 잘 팔리는지 해외사례도 조사하고 국내에서도 상품들이 성공한 것이 어떤 것인지 조사해서 타겟을 제대로 잡고 거기에 맞게 작가들을 선정해야 되는데 자꾸 좋은 작가한테 맡기면

다 성공할 거라는 부분이 기획단계에서는 좀 뒤로 밀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작가한테 다 맡기면 될 것 같다는 이전에 기획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디자인재단에서 타겟을 의, 식, 주로 했다면 그게 외국인 대상이냐 내국인 대상이냐 그런 소비성향을 다 조사한 다음에 작가를 선정하고 분야도 집중해야 되는데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 유성자 이사 : 지금 이사장님이나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재단이 해야 되는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지금 불용을 하는 예산 자체가 저희가 팀 자체가 없어지면서 생긴 예산들에 대한 불용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충기 이사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면, 사실 지금 2억 5,000에 대한 사업기간이 10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지만 아시겠지만 저희가 행정상 12월말까지 직원들이 업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2월 첫 주와 둘째 주에는 모든 사업들이 정산되고 마감되어야만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아무리 사업을 보수적으로 잡는다 해도 한 달 정도 밖에 2억 5,000을 쓸 수 있는 사업기간이 마련이 되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13쪽에 보면, 1단계가 샘플제작 3억 3,500에 2단계 사업으로 상품화 제작이 2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 사업 계획을 보더라도 1단계 사업이 진행이 된 후에 2단계 사업이 가야되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처럼 구조가 보이는 거라서 제가 알기로는 1단계 사업도 아직 업체가 선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타이트하게 중요한 사업을 가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중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업무들을 담당해야 되는 직원들이 이 사업에 애정을 갖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기간에 대한 고려도 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유연식 이사 : 여러 이사님들이 우려의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저희 시

에서 아마 요청을 많이 드리고 해서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기간을 조금 유연성을 가지시고 정 하다가 안되면 이월도 하는 것이고 다만, 예산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니까 올해 불용된 예산을 활용하려는 취지니까 여러 이사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를 잘 상의하셔서,

○ 최경란 이사 : 네.

○ 한문철 이사 :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 번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 기술적으로 12월까지밖에 서류를 못 만드실 겁니다. 그런데 올해 발주하고 잔금지급 같은 것은 내년도에 나가겠지요. 행정 기술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딱히 3개월만 된다고 현실적으로 했지만 서류는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우리 이사님들이 행정적으로 이해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오래 되고 뜨거운 과제잖아요. 디자인계에서 해왔던 과제이고 저도 이 업무를 꽤 오래 담당했었습니다만 국가에서도 역시 공예상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여러 가지로 했는데 결국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상품이 수준도 낮고 개수도 적고 하기 때문에 시장님도 취임하시면서부터 계속 저한테 요청하셨던 사항중의 핵심적인 사항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이나 사업방향은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필요한데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저도 오늘 계속 이것을 하면서 생각한 것이 우리가 요즘 흔히 집단지성 얘기도 많이 하는데 분야별 그룹의 전문가 군들이 나름대로 본인들끼리 하나의 의견을 어떻게 만들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계속 주셔서 사실 우리 디자인재단이나 디자인본부의 직원들이 사실 행정을 하는 파트이지 직접 이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외부에 워낙 좋은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그룹핑을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이 제시하는 방향을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직접 조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외부용역을 줘도 그분은 그 용역기간 내에 맞추다보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

때문에 사실 제대로 된 게 안 나오는 한계가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전문가분들 그룹핑을 통한 의견을 듣고 그분들이 제시한 방향대로 사실 그동안에 오랫동안 해왔지만 현실적으로 다 실패했잖아요. 제가 한 행정도 다 실패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방향으로 해서 그야말로 전문가 분들께 의뢰해서 그분들의 제안대로 한번 해보는 것 어차피 그동안 많이 실패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 최경란 이사 : 감사합니다.
- 강병길 이사장 : 한이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기준에서 우리 재단에서 지금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명칭이 뭐가됐건 코디네이터 사업이랄까, 그분들이 책임지고 10개 이상의 아이템을 브랜딩을 열 분이 하면 100개 정도의 아주 경쟁력 있는 그런 브랜딩 된 서울시 또, 우리 DDP에 특화된 성과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가지고 전시도 하시고 밀라노도 가시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지금 여기에 서 이것만을 위해서 디자인을 할 생각을 하면 거의 승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 이사님 의견 주신 대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시지요.
- 최경란 이사 : 네, 알겠습니다.
- 강병길 이사장 :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안번호 제183호 2019년 예산 전용(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인사규정 개정안

- 간사 :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호 인사규정 개정안입니다. 자료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규정 제13조(보직)과 제21조(승진의 제한)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2019년 2분기 노사협의회’ 협의 결과로, 안정적 근무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순환보직 실시 대상 기준을 근무 기간 6개월 이상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서울시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직원에 대해 감사 및 인사 업무, 승진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료 22페이지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강병길 이사장 : 네, 안전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이사님들께서는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충기 이사 : 지금 직원에 대해서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뒤에 정직 이상 3년, 정직 미만 2년 동안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정직 이상 3년, 정직 미만 2년의 징계를 받은 사람을 뜻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채용비위로 정직3년, 정직2년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 3년, 정직 미만 2년 동안’에서 ‘동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 유연식 이사 : 정직 이상을 받으면 3년 동안 그 업무를 못하게 한다는 뜻 아닙니까?
- 이충기 이사 : 이게 표현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은 기간 동안’ 그런 건가요?
- 지원본부장(김상헌) : 지원본부장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직을 받은 이후로 3년입니다.
- 이충기 이사 : 그러면 ‘정직 이상’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 최경란 이사 : 정직보다 더 높은 징계수위를 말하지요.
- 이충기 이사 : 그런데 그 뒤에 붙은 것이 정직 이상 3년, 정직 미만 2년 동안,
- 지원본부장(김상헌) : 정직 미만은 경징계를 뜻하는 것인데 2년 동안 감사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중징계를 받으면 3년 이상, 경징계를 받으면 2년 정도는 감사나 인사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 신중범 이사 : 이것은 문구를 수정해서 채용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가. 해서 정직 이상인 경우는 3년 이상 이렇게 하면,
- 이충기 이사 :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는 3년, 정직 미만의 징계를 받은 경우는 2년 동안 감사업무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현이 너무,
- 지원본부장(김상헌) :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그대로 준용 했는데 그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병길 이사장 : 행안부의 근거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 유연식 이사 : 표준안이 내려오지요. 거기라고 해서 다 맞는 것은 아니니까 고치라고 하시지요.
- 이충기 이사 : 잘 이해가 안돼서요. ‘정직이상은 3년, 정직미만은 2년’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 한문철 이사 : 사실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 이충기 이사 : 아니면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유연식 이사 : 재단에서 변호사님하고 상의하셔서 법조문 문구에 정확히 해서 오해가 없도록,
- 최경란 이사 : 네, 문구는 이사님 두 분이 변호사님이니까 잘 상의해서 그 뜻이 명쾌하게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본부장(김상헌) : 행안부 인사운영기준을 그대로 읽어보면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채용비리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 3년, 정직 미만 2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것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정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 최경란 이사 : 이게 공기업과에서 온 권장문구를 그대로 쓴 거지요.
- 지원본부장(김상헌) : 그렇습니다.

- 최경란 이사 : 저희가 수정을 안했습니다. 이렇게 바꾸세요. 하고 개정안을 주시면 그렇게 했는데,
- 이충기 이사 : ‘정직 이상은, 정직 미만은’ 이라고 ‘은’자 하나만 넣어도 다를 것 같습니다.
- 한문철 이사 : 기본적으로 그쪽에서도 공무원들이 만든 것이 내려온 건데 올린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 변호님 말씀처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 강병길 이사장 : 그러면 제13조 보직에 인사규정 개정안은 좌변호사님하고 신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해서 문구를 수정 후 산입하기로 한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동의해주십니까?
(「네」 하는 이사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인사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DDP 대관규정 개정안

- 간사 : 의안번호 제185호 DDP 대관규정 개정안입니다. 자료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DDP 대관 방식과 기준이 다양하고 용어가 불명확하여 대관고객에게 모호한 정보의 발신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성수기 기간 중 공공성 대관 점유로 인해 일반 대관과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경영지원팀에서 진행한 규정정비 컨설팅 추진계획(안) 결과를 반영하여, 혼용된 대관규정 용어와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정비하고, 대관 제한 등 대관 기준의 정의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성, 특별할인, 협력유치 행사 할인율을 조정하여, 수익과 공공성의 균형점을 마련하고, 대관료 반환, 미납에 대비한 규정 보완 및 신규 대관공간 개발로 공간 활성화 및 수익기여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자료 25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강병길 이사장 : 대관 관련 규정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축약해서 설명을 어느 분이 해주시겠습니까?
- 간사 : 제가 36페이지 내용을 보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비교내용은 어법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36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이 되면 2020년부터 적용되는 대관료의 내용인데 현재 저희가 시간당 m^2 단가를 새로 적용하는 것으로 인상률을 적용하는 부분이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살림1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12월에 새롭게 개관하게 되면 새로운 대관공간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살림1관에 대한 대관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강병길 이사장 : 현행하고 비교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대관료는 없습니까?
- 간사 : 대관규정안을 별도로 출력해 온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배포해드릴까요?
- 백준상 이사 : 얼마나 인상됐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지 인상된 것도 좋은데 뭐가 개선되어서 인상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물가인상률 때문에 인상된 건가요?
- 강병길 이사장 : 글썄, 그것을 비교해봐야겠네요. 별표1이 2018년도 DDP대관료와 오늘 나눠준 책자 별표4항의 2020년도 DDP대관료를 간단하게 비교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상된 기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고 구체적으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 거지요.
- 최경란 이사 : 대관 할인율이 사실 이제까지 가장 큰 차이가 대관료를 많이 인상하지는 않았고 옛날의 기준인데 지금 할인율이 가장 큰 차이로 알고 있는데 대관할인율이 이제까지는 공공기관이면 50% 아니면 때에 따라서 무료다 애매한 기준으로 했는데 공공도 기획을 같이 할 때는 몇 퍼센트 아니면 공공기관이니까 우리 디자인과 관련된 그런 행사니까 할인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세분화한 것이 이번에

큰 특징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주최 할인율이 이제까지 무조건 50%인데 20%로 했고 사실 그게 애매해서 주장에 따라서는 거의 무료로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너무 많고 사실 공공이라는 것이 애매합니다. 자치구도 있고 서울시 유관기관도 있고 산하기관도 있고 퍼블릭 기관도 있고 비영리 기관도 있고요.

- 관계공무원 : 지금 금액에 있어서는 크게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개정하려는 이유는 저희가 DDP를 대관하는데 있어서 총 건수가 75건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30건 정도가 공공성으로 해서 50% 할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저희 재단 매출로 따지면 기여가 얼마 안됩니다. 16.3%밖에 기여가 안되어서 이것을 공공성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요율을 낮춰서 DDP의 재정을 좀 더 건전하게 만들자는 것이 가장 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 주최로 되어 있을 때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관련된 것들은 30% 그리고 나서 국가기관은 20% 그리고 나서 일반 사기관은 10%로 줄여서,

- 강병길 이사장 : 몇 %에서 10%로 줄이는지, 다 일률적으로 50%였습니까?
- 관계공무원 : 아닙니다. 50%에서 지금은 일률적으로 무조건 50%되어 있었던 것을 요율에 차별을 뒤서 DDP의 재정을 좀 더 건전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최경란 이사 : 사실은 예를 들어서 알림1관이다 하루에 1,000만원인데 50%면 500만원 이룸만 빌려줘야 되는 난처함이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주던 것을 안줄 수도 없고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고 사실 5년간 운영하면서 세분화되지 않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시범운영하면서 나름대로 DDP도 자구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대관에서 1년에 70억, 주차료 10억해서 150억~160억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더 이상은 수익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관을 보니 대관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87%인가, 코엑스보다 대관률이 높습니다. 아무리 비싸기도 하고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다고 하나 최대한으로 비수기 빼고는 대관을 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수익이 한정되고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가를 보니 공공기관에서 쓰는 것이 너무 많고 불가피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성을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공동 주체가 가능한가, 이런 부분 규정을 해놔야지 때로는 그 자체가 비용도 비용이지만 민원이 많습니다. 왜 우리는 50% 안해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세분화해서 콘텐츠도 대관도 공공을 함으로써 디자인에도 기여하고 저희 DDP의 목적성에 부합되는 내용으로도 더 가깝게 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도 정체화된 수입을 약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그러니까 양과 질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부분과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디자인 운영본부의 자구책으로 약간의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해줬는데 왜 안해주느냐,

- 강병길 이사장 : 경제적인 자립도 중요하지만 타기관과 유사기관하고의 대관료 비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앞으로 한전부지 하고 있는 데가 엄청난 대관시설을 가질 텐데 결국은 양질의 좋은 대관 파트너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서 제 생각에는 대관료를 올리고 내리고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클라이언트들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려고 하는 우리의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간사 : 말씀하신 대관료 할인을 적용 기준은 책자 37페이지에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 한문철 이사 : 저도 한 말씀 올리면, 요금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금을 올려서 수익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요금을 올려서 수익이 줄 수도 있어

서 그랬을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수단을 갖고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서조항을 뒤서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대표이사가 정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서울시장이 정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만약에 없다면 예를 들어서 공간이 놓고 있는데 가격이 비싸서 못오겠다고 하면 담당자가 이것을 할인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할인도 해줄 수 없는 너무 경직된 운영을 통해서 실제로 좋은 클라이언트를 놓칠 수도 있는 그런 우려는 있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서로 경쟁이 치열해서 이것을 갖고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제가 말한 것이 기우일 텐데 혹시라도 그런 우려는 없을까 걱정이 됩니다.

- 최경란 이사 : 그래서 저도 이게 민감해서 사실 베풀다가 더 베풀면 괜찮는데 이게 위축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 정황을 볼 때 구체화할 필요는 있었고, 맨 마지막에 진짜 필요하면 별표로 '위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행사의 성격, 공간사용의 범위, 광고 및 홍보정도, 기부 등을 감안하여 대관자와의 협의를 통해 대관료를 책정한다.' 이런 별도 항목을 뒤서 부득이한 경우 정말 우리가 항상 예외의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항목을 넣도록 했습니다.
- 한문철 이사 : 이 조항은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이지요. 1. 기본시설 및 기타시설 대관료 2. DDP촬영 시설 대여료 3. 대관료 할인을 적용 기준은 전체에 대한 부분이지요?
- 최경란 이사 : 3번에 대한 것입니다. 3-1, 2, 3, 4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한문철 이사 : 제가 주문을 직접 현실적으로 비교를 못해서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모든 시설 대관료에 대해서 할인율을 이렇게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대표님이 갖고 계시면 좋은데 만약에 규정상 그렇지 않고 특정한 부분만 하고 어떤 부분은 안된다고 하면 나중에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사회 열어서 개정하려면 그것도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고요. 그런 우려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 최경란 이사 : 네.
- 이충기 이사 : 추가로 규정 25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안이 원래는 행사하고 전시 및 관련 부대행사로 되어 있는데 개정하면서 왜 부대행사를 뺐는지 모르겠네요. 26페이지에 보시면 ‘대관 신청’에 중간에 보면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전시 팔호 열고 공연 등 계획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공연을 집어넣고 앞에 부대행사 자체에 공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왜 행사하고 전시로 한정을 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 최경란 이사 : 전시를 사업으로 바꾼 것 같아요.
- 이충기 이사 :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것이 뒤로 가면서 그것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앞에 대관의 정의에는 행사하고 전시만 딱 못박아놓고 뒤에는 사업계획서라고 해놓고 사업은 또 뭘니까? 전시기획이면 전시기획이지 사업계획서 하고 팔호 열고 ‘전시, 공연 등 행사’라고 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앞에 대관의 정의하고 안맞습니다.
- 최경란 이사 : 대관의 정의를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전시, 공연 이외의 형태들이 각종 다양한 복합행사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사업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개정안을 했는데 대신 대관의 정의에서 더 포괄적인 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충기 이사 : 그 부분은 용어가 사업계획서라는 것도 공간을 임대해서 쓰는데 사업계획서라는 말을 쓰는 것도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용어의 표현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25페이지 대관의 범위에 기본시설과 부대시설로 나누는데 제가 의아하게 봤던 것이 대부분 공간을 임대하는 거잖아요. 공간시설이라고 하고 2번은 부대시설을 보니까 다 설비에요. 그 뒤에 공간, 장치·장비, 매체로 말이 안맞는데 1번이 사실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2번에 부대시설에 공간, 장치·장비라고 공간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 관계공무원 :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본시설하고 부대

시설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 이충기 이사 : 그러면 대관의 범위가 다 없어지는 겁니까?
- 관계공무원 : 지금 기본시설하고 부대시설만 해서 되어 있고,
- 이충기 이사 : 그러면 기본시설은 뭘니까? 기본시설의 정의가 없잖아요.
왜 없어진 겁니까? 뭘 임대해준다는 그 자체가 없는데요.
- 관계공무원 : 별표3항으로 뺐습니다.
- 관계공무원2 : 공간운영팀 대관담당자입니다.
지금 본문에 시설들이 쪽 늘어나거나 할 때 본문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서 표로 깔끔하게 별표3으로 뺐 사항입니다.
- 이충기 이사 : 아니, 그게 기본시설만 되어 있잖아요. 부대시설에 대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 관계공무원2 : 부대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치·장비가 들어있어서,
- 이충기 이사 : 그게 아니라 기본시설과 부속시설로 바꿨는데 별표3에 기본시설만 있고 부속시설이 어디로 갔느냐는 말입니다.
- 관계공무원2 : 본문에 보시면 알람터에 있습니다.
- 이충기 이사 : 그게 부속시설이면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기본시설 안에 부속시설을 또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기본시설과 부속시설이라고 해놓고 뒤에는 제목을 그 안에 집어넣으면 말이 안 맞습니다.
- 최경란 이사 : 그냥 대관시설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 관계공무원2 : 저희가 이번에 진행하면서 모순이 생기는 것을 많이 정비하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수정하겠습니다.
- 이충기 이사 : 제가 볼 때는 공간임대하고 그 다음에 부속시설하고 야외공간도 있는데 기본시설 안에 전부 다 기타로 집어넣어서 야외공간 이렇게 기본시설로 넣었던 말입니다. 원래 것을 잘 조정하면 그러니까 크게 보면 공간임대가 있고 부속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야외공간 이렇게 나뉘지면 명료할 것 같은데 표로 정리하면서 오히려 그게 더 혼란스러워진 것 아닌가요? 그것을 다 기본시설로 집어넣어놓고 부속시설도 기

본시설로 또 넣어놨단 말이에요.

- 백준상 이사 : 기본시설 및 기타시설로 되어 있어서,
- 이충기 이사 : 그것도 또 기타시설이고 말이 서로 안맞습니다.
- 한문철 이사 : 지적 말씀이 맞는데 25쪽에 보면, 기본시설과 부속시설로 나뉘었는데 36쪽에 보시면 기본시설 및 기타시설로 되어 있던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기본시설은 알림터, 배움터, 살림터가 기본시설이고 밑에 기타 갤러리문이나 야외공간을 기타시설로 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 알림터의 부속시설은 기본시설 내에 부속시설이니까 별도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차라리 25쪽의 4조를 기본시설 및 기타시설이라고 용어를 그렇게만 고쳐주면 표하고 일치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 이충기 이사 : 그렇지요. 부속시설은 기본시설 안에 들어가는 거고.
- 한문철 이사 : 기본시설과 기타시설이라고 용어를 바꿔주시면 제가 볼 때 그 문제는 해소될 것 같습니다.
- 이충기 이사 :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원래 개정취지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표를 기준으로 앞의 것을 바꿀지 앞의 기준으로 표를 바꿀지는 고민해야 합니다.
- 강병길 이사장 : 정리한 것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훨씬 폭도 넓고 앞으로 추가되거나 또는 삭제되는 시설들에 대한 것이 융통성이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의견주신 대로 36쪽에 나와 있는 기본시설 및 기타시설 대관료로 한다면 3번에 부속시설만 ‘기타시설은’ 그렇게 바꾸면 전혀 전체 내용에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한문철 이사 : 그 다음이 아까 이충기 이사님이 지적하셨던 26쪽에 6조 1항을 보시면 전시만 되어 있는데 사업 팔호 열로 전시, 공연 등 행사 점 전시’로 바꿔주신다면 앞의 용어에서 25쪽에 나와 있는 용어의 정의가 대관의 정의하고 일치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6쪽에 6조도 ‘행사 .

전시'로 바꿔주시면 행사 전시라 함은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도 행사 사업계획, 전시 사업계획으로 포괄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충기 이사 : 또 하나 25쪽에 4조가 대관의 범위인데 대관을 시설위주로 대관의 범위를 정의해놓고 별호는 대관료까지 붙여놔 버렸어요. 그러면 4조는 '대관의 범위 및 대관료'라고 적어야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표는 대관료까지 다시 붙여서 해봤는데 그러면 대관료 규정이 따로 있지요. 그러면 이 표를 이렇게 작성하면 안돼요. 대관료 규정에서 다시 별표로 만들어서 대관료를 만들어 놔야지 대관의 범위라고 해놓고 별표 해서 대관료까지 붙여버렸어요. 그것은 분리해야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관'이라는 단어자체가 오랫동안 굳혀져온 단어이기는 한데 젊은 사람들은 대관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공간임대 규정이라고 하든지 시설임대 규정이라든지 다 대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자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대관이 뭔지도 몰라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보세요. 지금 이것을 저희만 고칠 수 있는지 행정적인 부분이 있기는 한데 '관'자가 '시설 관'자인데 공간임대규정 뭐 이렇게 하든지,

- 최경란 이사 : 임대와 대관도 다르게 쓰이고 임대 및 대관규정으로 해야 될지,
- 이충기 이사 : 대관은 시설을 임대하는 것이고요.
- 강병길 이사장 : 그래서 개정안에는 임차로 했어요.
- 이충기 이사 : 내용은 임차이지 않습니까?
- 유연식 이사 : 세종문화회관은 현재로써는 대관규정이라고 한다면,
- 이충기 이사 : 세종문화회관은 대관이에요. 그런데 DDP는 어디에도 '관'이라는 말이 없는데 갑자기 대관이 등장하는 거예요. 용어로 DDP관이라고 해야 대관 규정이지요.
- 한문철 이사 : 이게 전반적인 의견은 동일하니까 자구 수정은 변호사님 자문을 받아서 자구수정을 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의결하시지요.

○ 좌세준 이사 : 제가 다른 사항을 질문을 드리면, 현재 9조에 보면 대관료 9조4항에 '재단은 이러이러한 경우에 대관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이 어떻습니까? 대관심의위원회도 있고 한데 이런 할인해줄 수 있는 게 기존의 공공성, 협력 유치 부분이 있는데 그냥 결재를 받아서 이 업체는 이 할인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고 계신지 아니면 대관심의위원회에서 대관허락 여부와 여기는 4개중의 하나 어디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을 묻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 개정안에도 위험한 조항이 있는데 28페이지 9조3항 3호에 '대관료를 감면할 사유가 있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하여 재가하는 경우' 이렇게 일반적인 조항을 넣어놨어요. 그런데 감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이런 경우에 금전적인 재량권 행사하는 경우에 그게 제대로 감경해줄 것을 감경해줬느냐, 면제해줄 것을 면제해줬느냐를 삼아서 그게 개인적으로 아는 업체 이렇게 해준 거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불가능하지 않다면 대관심의위원회에서 대관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여기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할 때 그 4항의 항목도 같이 심의를 해서 어떤 할인을 적용할 것인지 해서 위험을 분산해줘야지 이렇게 한 분에게 했다가는 이게 통상 공격의 대상이 되고 감사의 대상에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과 개정안의 취지를 잘 맞추셔서 가능하다면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하신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이 최종적으로 이것은 이런 예외규정을 두거나 해서 이 부분을 조정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간사 : 이사님 말씀하신 내용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년 전 해에 정기대관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 들어온 내용들을 심사해서 DDP성격에 맞는지 저희 디자인재단에 부합되는지 심사를 해서 대관료를 결정하고 그리고 일정이 비어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그 다음

달부터 매달 수시대관을 진행해서 비어있는 공간을 계속 대관하는 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9조의 3항 '대관료를 감면할 사유가 있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하여 재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전에 한문철 이사님께서 지적해주신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형평성을 잘 감안해서 조정해야 할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책자 37페이지에 대관료 할인을 적용기준에 보면 공실 할인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온 항목 중에 예를 들어서 동시에 같은 날짜에 꽤 많은 행사들이 신청했는데 알림2관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알림1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알림1관을 할인해주는 가격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융통성은 별표의 내용에 대한 별도사항을 해야겠다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하고 같이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충기 이사 : 또 하나 27페이지에 보시면 9조 4항에 '다음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했으면 밑에 나오는 것은 1, 2, 3, 4가 다 '무슨 무슨 경우'라고 되어야 해요. 그런데 1번과 2번, 3번까지 다 경우인데 4번에 와서 갑자기 주어가 등장합니다. '재단'은 빼야합니다. 재단 자체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의 행사, 전시의 경우라든지 뭐 이렇게 끝나야하는데 또 뒤에 경우라고 해놓고 다만, 들어갈 때는 서술할 수 있어요. '경우'라고 해놓고 뒤에 서술을 해야 하고, 5번도 보시면 경우라고 하고 끝나야하는데 '별도 절차 없이 바로 적용한다.'고 또 서술해놨어요. 이렇게 하면 안맞습니다. 이런 것을 작성하실 때는 변호사님하고 상의하세요. 직원들이 그냥 수시로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 관계공무원2 : 저희가 작년5월에 이사회에서 규정에 대해서 용어가 혼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서 올해4월에 구 경영

지원팀에서 규정 컨설팅을 진행했었습니다. 대관이 가장 큰 용역으로 들어갔고 8월쯤에 결과가 나와서 사실은 지금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변호사님의 컨설팅을 받은 내용을 넣어놓은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 한문철 이사 : 그러니까 완벽한 것은 없는 거니까 지금 말씀이 맞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보완하면 되지요.
- 관계공무원2 : 네, 추가로 보완하겠습니다.
- 신종범 이사 : 규정 전체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정이 많다보니까 놓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A/S차원에서 한 번 더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유연식 이사 : 지금 새로 만든 할인율 표를 보면 깔끔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그것에 관한 개정안 나와 있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27페이지에 ‘감경 면제한다는’ 약간 혼동이 되어 있어서 해석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 최경란 이사 : 제가 보기에는 조금 브로드하게 되어 있고 감면율이 하다 보면 조금씩 바뀔 수 있을까봐 안 집어넣은 것으로 봅니다.
- 유연식 이사 : 그래서 할인율을 바꾸시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옛날에 ‘공공성’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했다는데 이 조문에는 공공성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은 명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할인율에 ‘공공성의 주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진행되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공공기관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민간기관이 그냥 공공기관에서 보조금 받는 그런 경우까지 용어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 관계공무원2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한 가지 사례가 문화부의 사업비를 받아서 매년 하고 있는 행사 중의 하나가 장애인 관련 행사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는 민간 사단법인입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공공성을 둘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

제가 있었는데 결국에 국비를 받거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내용 자체는 저희가 원래 도입취지에 맞게끔 공공성 행사라고 생각해서 이 조항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 유연식 이사 : 그런데 여기 항목에 ‘공공기관 주최’라고 명확히 되어 있어서 해석에 혼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 관계공무원2 : 앞의 내용하고 뒤의 내용이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연식 이사 : 그리고 한 가지 우려사항을 말씀드리면, 할인율을 과감하게 굉장히 낮추셨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서울특별시 주최 여기는 아마 각 과에서 DDP대관을 생각하고 이미 예산이 거의 끝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하시면,
- 최경란 이사 : 그럴 때는 ‘따옴표’에 마지막 항목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공공 하는 데가 서울시를 염두에 두고 공공을 하다보니까 모든 게 공공이 되는 겁니다. 서울시는 그런 경우는 할 수 있는 항목이 그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은 예외항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서울시가 공공이기 때문에 다른 공공까지 다 할인을 똑같이 해주다보니 좀 모순이 있습니다.
- 유연식 이사 : 서울특별시만 기존대로 하고 다른 데는 더 받으시고,
- 강병길 이사장 : 그렇게 하시면 예외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경과조치로 2020년도는 예외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대표이사가 늘 재단이 임의로 전시회 성격과 내용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대관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특히 외부대관 자체 기획이 아닌 거의 대부분 일반대관의 경우는 대관심의위원회가 정말 중요하게 기능을 해야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삭제한 것 가운데 ‘우리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그런 성격의 것들 앞부분에 소규모 세미나, 포럼 나눔

관 같은 곳에서 이뤄지는 이런 것은 내부 심의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매년 심의위원회를 열지 못하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단 자체 사업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대형행사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견제 장치 없이 심의 과정 없이 매년 그대로 심의를 받지 않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서 혹시 필요한 경우에 사후에 심의를 받고 평가를 받더라도 제 생각에는 자체의 경우 무조건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규정인 것 같습니다. 타 기관도 이렇게 하면 모든 자체 사업을 하면서 협력사업 이렇게 전용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규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경란 이사 : 네.
- 유성자 이사 : 저도 이사장님 의견에 동의하고, 저희가 봄과 가을에 워낙 자체행사들이 많아서 대관을 진행하다보니까 사실 그때가 성수기이기는 하거든요. 저희가 대관을 진행하면서 DDP재정자립을 하기 위한 주요 성수기인데 저희가 모든 행사들을 그냥 걸어놨다가 직전에 취소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주요한 기간에 결국은 수입을 올리지 못해서 담당자들에게 그 부담이 고스란히 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내용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기간에 대해서도 분명히 필요한 기간에 절차를 통해서 부킹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최경란 이사 : 저도 개인적으로 1년 반 동안 보면, 우리 재단행사지만 알림1관에서 반드시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드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대관을 해서 적극적인 시민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 재단행사지만 예를 들어서 패션위크 이런 것은 당연히 여기에서 해야 하지만 가끔 보면 그렇지 않은 패션위크에서 어떤 행사는 가능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적합한 공간배치에 대한 것은 약간의 전문가적 의견을 달고 하는 그런 이사장님 의견에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니다.

- 이충기 이사 : 32페이지 15조에 보시면, ‘대관신청 제한을 다음의 경우에 제한한다.’고 해놓고 6번이 나옵니다. 예술성이 배제된 행사 같은 경우에 종교단체, 정치단체가 나와 있고 33페이지 7번에 보면 ‘디자인문화 확산 및 디자인산업진흥’ 해놓고 동문회, 관혼상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6번과 7번이 왜 분리되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예술성 및 디자인문화 확산 이렇게 같이 묶어도 될 것 같은데 앞에 예술성에는 종교단체, 정치단체가 들어가고 디자인문화 확산 및 디자인산업진흥에는 동문회, 관혼상제가 들어가는 이유가 왜 이렇게 구분하는지 이해가 안되고, 또 하나 36페이지 6번에는 ‘종교단체가 주최, 주관, 후원, 협찬하는 행사·전시’라고 서술해서 길게 뽑아놓고 7번은 동문회 해놓고 끝났어요. 그러면 동문회가 주체, 주관, 후원하는 앞에처럼 맞추려면 동문회가 주최, 주관, 후원 협찬하는 행사 전시라고 해야 6번하고 맞는데 뒤에는 동문회, 관혼상제 하고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도 서술상 안 맞아요.

그리고 관혼상제 이런 말을 요즘 누가 씁니까? 그냥 풀어서 쓰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 누가 상가행사나 제사를 누가 합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DDP에서 누가 관혼상제를 합니까?

- 강병길 이사장 : 이것은 AS항목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추가로 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수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 이충기 이사 : 네.
- 최경란 이사 : AS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최종스크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강병길 이사장 : 그러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 유연식 이사 : 할인율에 대해서는 협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 강병길 이사장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 최경란 이사 : 네. 유예기간도 있지만 이사님께서서는 지금 서울시의 할인율을 50%를,
- 유연식 이사 : 내후년은 그런데 내년부터 갑자기 되면,
- 한문철 이사 : 제가 볼 때 부칙에다 ‘2020년에 서울시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다든가 그러하지 아니한다든가’ 그 부분을 서울시 부분만 한정하고 왜냐하면 모든 공공기관을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부칙에다가 경과규정을 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 강병길 이사장 : 아니, 서울시를 포함해서 2020년 대관심의가 이미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 최경란 이사 : 지금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에는 적용을 해야 되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이대로 내년을 가져가면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이 애매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 강병길 이사장 : 그러면 이것을 2020년부터 적용하겠다는 거지요. 이것을 발표하면서? 그런데 이미 예산이 자체적으로 다 끝났기 때문에,
- 최경란 이사 : 네. 그래서 서울시 부분만은,
- 유연식 이사 : 저희가 그것을 협의를 조건으로 해주시면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란 이사 : 그 내용을 인지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해석을 부칙까지 넣어야 되는지,
- 신종범 이사 : 문제되는 사항이 있다면 부칙에 규정 제9조 대관료와 관련한 별표 대관료 규정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심의가 끝난 서울시나 이런 등에는 그 이후에 유예하는 것으로 한다든지 부칙을 두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최경란 이사 : 알겠습니다.
- 강병길 이사장 :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안번호 제185호 DDP 대관규정 개정안을 전문가와 보완하는 것으로 수정 차기이사회에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상정안건 182호, 183호, 184호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185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와 상의 후 '수정해서 보완' 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 직장내괴롭힘금지 운영내규 제정
2. 인사규정시행내규 일부 개정
3. 임금피크제운영내규 일부 개정
4. 업무분장 내규 일부 개정

(보고안건)

- 간사 : 다음 보고안건은 4건입니다. 자료 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운영내규 제정, 인사규정 시행내규와 임금피크제 운영내규 일부 개정에 대해서는 김상헌 지원본부장님이 보고해주시고, 업무분장 내규 일부 개정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본부장님 보고 진행 부탁드립니다.

- 지원본부장(김상헌) : 지원본부장 김상헌입니다.

보고안건으로써 내규제정 1건, 내규개정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운영내규 제정 보고입니다.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 재단에서도 사내에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관련사항,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절차, 피해자보호조치, 행위자 제재, 재발방지 조치들을 20개 조항으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제정함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취업규칙표준안을 준용하여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내규개정 건입니다.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에 있어서 2019년

7월 10일 인사규정 개정과 병행하여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하였는데 먼저 주요내용을 보면, 채용계획수립 시 자치단체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일 전에 지자체에 통보함으로써 지자체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시험외부위원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주요내용은 비상임이사, 퇴직자들 실질적으로 내부인들하고 관여될 수 있는 분들을 외부위원으로서 제외시키는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채용비리 관련해서는 채용비리자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채용비리자에 대해서 별도로 징계에 관한 양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6월 25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강화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에서 0.08로 강화됨에 따라서 재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했을 때 경우 0.1에서 0.08로 바꾸는 작업을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금피크제 운영내규입니다. 재단에서 노사합의에 따라서 서울 우리재단이 갖고 있는 임금피크제 운영내규와는 조금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내규를 만들게 됐고 그 주된 내용은 임금감액 대상자 중에서 직전년도 기본급이 서울시생활임금의 150% 이하인 자는 임금피크 연령에 도달하더라도 임금을 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좌세준 이사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운영내규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매달 한번 위원회를 개최하면 서울시 출연기관 우리 재단도 마찬가지로 이런 유사한 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아주 심각한 사례들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특히 내규를 잘 마련하셨겠지만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는 하위 근로자 노동자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는지 창구를 정확히 만들어놓으시라는 것하고 또, 내부적

으로 사건처리 민원 그런 것들을 조사할 때 가능하면 내부적으로 해결 될 수 있는 절차나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은 취업규칙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부분도 개정이 되어야 해서 특히 출연기관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대단히 심각하고 그럴 경우에는 가해자인 경우에 징계규정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만드신 김에 절차를 잘 만드셔서 홍보를 정확히 해주시고 예를 들면 묻히지 않도록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동자분들에게 잘 알려주셔서 그게 또 예방절차가 됩니다.

그리고 내부지침 노동부지침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을 사적인 회사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노동자이사님들과 그 부분은 명확한 의사소통을 하셔서 오히려 사용자측에서 그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원본부장(김상헌) :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담원은 다 되어 있고 조사위원회 설치도 충분히 되어 있고 다만, 우려하시는 부분이 노사에 전파와 교육 또는 합의된 사항 또는 궁극한 사항을 채우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근로자이사와 노조를 통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병길 이사장 :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마지막 보고안건에 대해서 보고해주십시오.
- 간사 : 마지막 보고안건은, 업무분장 내규 일부 개정입니다. 내외부 요구 사항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하반기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지난 7월 17일자로 조직체계와 업무분장을 재정비하였습니다. 투자출연기관 혁신실행계획 이행의 일환으로, 디자인교육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생애주기 디자인교육 TF'를 신설하였고, DDP사업 운영팀을 신설하여 DDP기획 및 관리업무를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대두됨에 따라 안전 관리자가 배치되어 있는 시설안전팀에 재단의 모든 시설 관리업무를 배정하여 안전

관리 업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강병길 이사장 : 업무분장 내규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님들께서 오늘 의결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의결서에 서명날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과는 별도로 재단에서 지난 9월 16일에 개최했던 휴먼시티 디자인 어워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다고 합니다.

- 간사 : 지난 9월 26일날 진행됐던 휴먼시티 디자인 어워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영상 상영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람과 환경의 조화로운 관계를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디자인으로써 대상 한 작품을 선정하여 상금 1억 원을 수여하는 어워드로 올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자격은 국가, 도시 지자체 및 디자인관련 대학, 학회, 협회 등의 디자인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개인 혹은 단체를 중심으로 진행하였고, 서울특별시 주최 서울디자인재단 주관으로 진행하면서 디자인 관련 단체들과 후원협력으로 함께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워드의 목적은 디자인을 통하여 사람과 환경의 조화로운 관계를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계를 구축하고 도시의 복합적인 문제들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 방법으로서 디자인의 사회적 문제해결과 치유기능을 전 세계로 확대하면서 디자인 분야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야로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 사람과 자연환경이 더욱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관계형성에 기여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전체 추진일정은 6월 27일부터 공고를 시작해서 53일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25개국 75개 작품이 접수가 됐고 1차 심사를 통해서 12개의 최종 작품을 선정해서 12개 작품이 어워드 현장에 와서 같이 작품을 공유하고 최종 대상 발표를 9월 26일에 진행하였습니다.

제출서류와 추천서 의뢰에 대한 내용의 소개가 되겠고 그리고 특히 심사 프로세스는 좀 전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외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심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화상회의를 통해서 수차례 진행이 됐다는 부분이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현장심사를 통해서 현지의 상황을 확인하고 이 프로젝트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인지 실제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전체 심사의 기준은 도시 삶의 문제해결, 세계적 가치 확장, 미래비전 제시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서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운영하는 과정에 대한 기본가이드라인을 마련해주셨는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이순중 교수님께서 운영위원장을 진행하셨으며 국내외 전문가들 특히 우리 이사님이신 이충기 이사님과 유연식 이사님께서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단체 총 연합회 회장님과 함께 같이 운영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디자인계와 함께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찰스랜드리 심사위원장이 심사를 현장에 오지 못했기 때문에 심사소감을 담은 영상이 있는데 간단히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란 이사 : 참고로 시장님께서 이 영상부분의 코멘트를 이 심사가 철저하고 공정하고 가치지향이 시의 철학과 공유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 간사 :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12작품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탈리아에서는 적절한 가격의 공공주택과 관련된 프로젝트, 프랑스에서는 세느강의 물을 활용해서 수자원으로 활용하는 프로젝트, 태국

에서는 파크 애비뉴 중앙 분리대를 재구성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공동체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 프로젝트를, 인도네시아에서 관광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도시 디자인 프로젝트를, 중국 홍콩에서는 길거리 노점 화재 안전 조연에 대한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에서는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공유하는 학교서비스화 프로젝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저소득 공동체의 저가주택의 적정가격을 산정하는 디자인 혁신 프로젝트를, 이탈리아에서는 민관 합작 투자사업을 만들어가는 신규 솔루션을 분석하는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제시했고, 베트남에서는 방치된 발코니에 공기정화식물을 설치해서 이것이 도시의 공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 싱가포르에서는 보건과 복지를 통합하는 네트워킹 프로젝트를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필동의 예술동이라고 해서 레저, 문화 행사와 경험에 의한 단지를 구성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상은 남아공 케이프타운의 두 눈 학습 혁신 프로젝트가 수상했고 컨테이너를 개조하여 도서관과 체육관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일상을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지 행사 당일의 사진이고, 수상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워크숍을 같이 참여했던 학생들과 함께 촬영한 사진 그리고 대상 프로젝트 앞에서 시장님께서 오셔서 같이 촬영하는 사진이고, 시장님께서 어워드에 다녀가신 이후에 이 사업 자체가 크게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 강병길 이사장 : 휴먼시티 디자인 어워드는 준비기간이 굉장히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해주신 분들 그리고 우리재단의 여러 직원들과 임직원들이 다 함께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서 큰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나라와 아이템 테마들이 참여해서 명실상부 세

제가 정말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지속가능한 개발 대상의 중심으로 휴먼시티 디자인 어워드가 자리 잡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격려 드리고 앞으로 더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박수)

오늘 말씀주신 다양한 의견들이 재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임직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디자인재단 제60차 이사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봉3타)

【11시45분 회의종료】